

제267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5.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76
----------	------

2024. 2. 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 18.
- 나. 회부일자 : 2024. 1. 25.
- 다. 상정일자 : 2024. 1. 30.

2. 안건설명

가. 제안설명자 : 허 은 의원

나.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에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명확화(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명확화(안 제4조) 및 용어의 정비 등(안 제5조)
- 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정비 (안 제4조의2)

라. 불법촬영 신고체계의 마련 등 추가(안 제4조의3,제4조의4)

라.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1. 24. ~ 2024. 1. 28.)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윤선영)

□ 의안번호 제217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허 은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자 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

하였음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는 ①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이는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규정함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조문을 단순 명확하게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고쳐 용어를 정비함

□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였음

□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음

☞ 조례 미개정 자치구 : 5곳(강북, 구로, 송파, 은평, 중구)

□ 광진구는 2021년 7월 20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신설하여 한 차례 개정한바 있음(2021.10.26.)

□ 광진구 공중화장실은 현재 37개소이며 현황은 아래와 같음(2023년 기준)

연번	행정동	명칭	설치연도	면적(m ²)	소재지	비고
계			37개소			
1	중곡3동 (5개소)	중랑천제방1	2010	21.00	동일로 399-1(중곡3동)	
2		중랑천제방2	2010	21.00	동일로 419(중곡3동)	
3		중랑천제방3	2022	33.25	중곡동 261-5(중곡3동)	
4		중곡3마을공원	2009	15.50	용마산로33길 25(중곡3동)	

5		배나무터공원	1991	15.09	동일로76나길 20(중곡3동)	공사중
6	중곡4동	해오름공원	1980	30.69	영화사로7길 25(중곡4동)	
7	(2개소)	긴고랑어린이공원	2007	9.24	긴고랑로 143(중곡4동)	
8	능 동	어린이대공원후문	1998	188.58	능동로 216(능동)	
9	(2개소)	어린이회관입구	2010	63.75	광나루로 441(능동)	
10	구의2동	숲나루공원	2020	35.35	구의동38-17(구의2동)	
11	구의3동	무궁화공원	1986	29.80	광나루로52길 12(구의3동)	
12	(5개소)	목련공원	1991	28.05	아차산로59길 49(구의3동)	
13		푸른동산공원	1974	14.88	광나루로44길 32(구의3동)	
14		구의공원	2014	99.00	광나루로56길 86(구의3동)	
15		구의3동주민센터	2012	27.70	강변역로 17(구의3동)	
16	광장동	온달공원	1998	19.89	아차산로73길 15(광장동)	
17	(6개소)	평강공원	2002	10.20	광장로1가길 31(광장동)	
18		아차산생태공원	2003	58.58	영화사로 145(광장동)	
19		광장동 청년회	2006	9.24	아차산로78길 133(광장동)	
20		광남중학교입구	2003	6.48	아차산로70길 17-47(광장동)	
21		광진숲나루 전망대	2023	40	광장동 401-14	
22	자양1동	장독골공원	1985	14.88	아차산로40길 46(자양1동)	
23	(3개소)	정말공원	2018	12.50	자양로13다길 34(자양1동)	
24		자마장공원	2018	18.00	자양로13길 41(자양1동)	
25	자양2동	금모래공원	1991	15.47	뚝섬로56길 28(자양2동)	
26	(3개소)	언덕배기공원	2003	14.40	뚝섬로62길 24(자양2동)	
27		자양유수지	2009	15.00	뚝섬로52길 74(자양2동)	
28	자양4동	청소년독서실	2022	63.28	뚝섬로30가길4(자양4동)	
29	화양동	가중나무공원	1998	14.88	동일로28길 16(화양동)	
30	(4개소)	햇님공원	1980	27.56	아차산로25길 27(화양동)	
31		한아름공원	1998	14.88	군자로3길 15(화양동)	
32		화양공원	1971	14.88	아차산로31길 14(화양동)	
33	군자동	광진광장주차장	2006	36.26	광나루로 389(군자동)	
34	(3개소)	군자어린이공원	2023	7.54	동일로 52길 26 (군자동)	
35	용마도시	아차산토요마당	2010	66.53	구의동 3	
36	자연공원	아차산게이트볼장	2017	12.00	구의동 4	
37	(3개소)	홍련봉공원	2018	21.09	구의동 38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

연번	화장실명	주소	합계	여자칸	세면대 (여)	장애인 (여)	남자칸	세면대 (남)	장애인 (남)
총 36개소			304	118	36	39	49	35	27
1	온달공원	아차산로73길 15	10	4	1		2	1	2

2	목련공원	아차산로59길 49	10	4	1	2	2	1	
3	구의공원	광나루로56길 86	11	3	1	2	2	1	2
4	어린이대공원후문	능동로 238	21	13	1	2	4	1	
5	어린이회관입구	광나루로 441	11	3	1	2	2	1	2
6	장독골공원	아차산로40길 46	8	2	1	1	2	1	1
7	자마장공원	자양로13길 41	8	2	1	2		1	2
8	금모래공원	뚝섬로56길 28	10	2	1	2	2	1	2
9	언덕배기공원	뚝섬로62길 24	7	3	1		2	1	
10	해오름공원	영화사로7길 25	9	4	1	1	2	1	
11	가중나무공원	동일로28길 16	6	2	1		2	1	
12	햇님공원	아차산로25길 27	9	4	1	1	2	1	
13	화양공원	아차산로31길 14	6	2	1		2	1	
14	긴고랑어린이공원	긴고랑로 143	7	3	1		1	2	
15	자양유수지	뚝섬로52길 74	6	3	1		1	1	
16	중곡3마을공원	용마산로33길 25	8	2	1	2		1	2
17	구의3동주민센터	강변역로 17	10	3	1	2	1	1	2
18	평강공원	광장로1가길 31	5	2	1		1	1	
19	광남중학교 입구	아차산로70길 17-47	6		1	2		1	2
20	무궁화공원	광나루로52길 12	6	2	1		2	1	
21	푸른동산공원	광나루로44길 32	6	2	1		2	1	
22	정말공원	자양로13다길 34	6	3	1		1	1	
23	중랑천제방1	동일로 399	10	3	1	2	1	1	2
24	중랑천제방2	동일로 419	10	3	1	2	1	1	2
25	한아름공원	군자로3길 15	6	2	1		2	1	
26	광장동청년회	아차산로78길 133	5	2	1		1	1	
27	광진광장 주차장	광나루로 389	8	2	1	2	2	1	
28	군자어린이공원	동일로 52길 27	5	2	1		1	1	
29	아차산 생태공원	영화사로 145	10	7	1	2			
30	지양청소년독서실	구의강변로 10	8	5	1		1	1	
31	숲내루 공중화장실	구의동38-17	13	5	1	2	2	1	2
32	토요마당	구의동 3	10	7	1	2			
33	홍련봉공원	구의동38	6	2	1	2		1	
34	야산게이트볼장	구의동 4	4	2	1			1	
35	중랑천 제방길	중곡동 261-5	10	3	1	2	1	1	2
36	숲나루 전망대	광장동401-14	13	5	1	2	2	1	2

공중화장실 CCTV 설치현황

○ 공중화장실 cctv 설치 동별 현황

계	중1	중2	중3	중4	능	구의1	구의2
12	-	-	1	2	1	-	1
구의3	광장	자양1	자양2	자양3	자양4	화양	군자
2	1	1	1	-	-	2	-

○ 공중화장실 cctv 세부 현황 ※ 2024년 추경예산 반영하여 100% 설치예정(시:구=50:50)

안전관리 시설 설치 현황(구청장 및 영제2조제2호 의무대상)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설치완료, 지방공기업 등 5개소 설치예정

(단위 : 개소, 2023. 12. 기준)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현황						비고 (사유 기재)
비상벨 의무설치 화장실 개소수	비상벨 설치 수					
	계	연 계			미연계	
		소계	관리자	경찰관서		
98*	93	93	26	67		미설치 5개소 (24년 설치예정) ※의무대상 안내 및 이행독려 ○서울특별시시설공단 - 어린이대공원 후문화장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구의3동 공영주차장 - 광진구민체육센터 화장실 ○광진문화원 ○광진문화예술회관

※ 의무대상(98개소*): 청소과 관리 공중화장실 37개소, 공원녹지과 관리 2개소, 구청 청사 등(동청사포함) 20개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1개소, 서울특별시시설공단 등16개소, 서울교통공사 10개소, 광진문화원, 광진예술회관 등

공중화장실 점검 현황 등(상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관내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 등

○ 주요내용 : 화장실 청결상태 등 관리실태 점검

- 화장실 개방 여부, 청결도, 시설물 파손여부 등 유지관리 실태

- 비상벨 등 안전시설 확인(매월1회 이상 점검) ※유지보수 용역
- 비누·세제 등 편의용품 비치여부 수시점검
- 화장실 관리인 애로사항 청취 등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15명

※1인 2~3개소 청소상태 등 관리(1일 3회이상 실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적(가정복지과 시민감시단)

(단위 : 개소횟수 2023. 12. 기준)

구분	화장실 점검개소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개소)
	계	공공	민간	
합계	1,358	394	964	-
1분기	231	93	138	-
2분기	259	103	156	-
3분기	538	103	435	-
4분기	330	95	235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하고자 제출되었음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에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됨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